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15 발의연월일: 2024. 12. 27.

발 의 자:서영교·한정애·박희승

송재봉 · 임오경 · 유동수

박균택 · 서삼석 · 위성곤

이강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도 보수 지급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본인의 잘못으로 탄핵소추 의결에 이르러 일을 하지 않게 되어도 탄핵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다달이 보수를 지급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대통령의 내란의 죄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 약 2천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탄핵된 대통령에게 혈세로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해당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고(안 제47조의 2 신설), 법 시행 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탄핵소추된 공무원의 보수)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해당 기간동 안 보수 전액을 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7조의2(탄핵소추된 공무원의
	보수)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해당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
	<u>한다.</u>